

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

1. 검토경과

- 가. 발 의 : 2008. 2. 22(김석관외 2인)
- 나. 회 부 : 2008. 2. 22(총무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6호)
- 다. 상 정 : 2008. 2. 29(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사유

- 설치근거를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고 위탁운영기간의 변경 및 시설장과 종사자의 전보 등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영유아의 보육시간을 삭제(제5조)
- 나.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(안 제9조)
 -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⇒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- 다. 시설장 및 종사자 전보 할 수 있는 내용 신설(안 제13조)
 -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 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.
- 라. 종사자의 신규 임용연령 신설(안 제13조의2)
 - 종사자의 신규 임용 연령
 - 시설장 : 54세 이하, 보육교사 : 30세 이하
- 마.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삭제(제13조의3)
- 바. 종사자의 연가일수와 특별휴가일수를 공무원복무조례와 일치시키고 휴직 관련사항을 신설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준용토록 함(안 제15조)
- 사.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법제처 권고안대로 정비
 -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⇒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

4. 관계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)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)
-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지침

5. 검토의견

- 개정조례안은 설치근거 등을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고 위탁 운영기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내용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위탁 운영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되, 실적에 따라 정년까지 연장 가능 한 것을 평가 실적에 따라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
 -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을 신설하였으며,
 - 종사자의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일수를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일치시키고 휴직관련사항을 신설 보완하였음.
- 검토 의견으로는
 -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등을 검토한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